민사소송(民事訴訟)

김 철 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

1. 민사소송이란?

살다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돈문제 등은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법대로 하자'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란 이처럼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법원에 재판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고소가 그것이다. 이 소송은 성격·적용법규 등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으로 나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으로, 주로 민법(民法)이나 상법(商法)상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보통 재산문제, 상속문제, 호적문제, 사업상 생기는 문제 등이 민사소송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 특히 돈문제는 거의가 민사소송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은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사회의 안녕을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말하자면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 살인·강도·절도·폭행·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은 특별히 관청의 행정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군청에서 뭘 잘못했을 때, 선거사범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민사소송의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민사사건을 해결하는데는 소송이외에도 민사조정(民事調整), 화해 등 여러방법이 있다. 소송은 화해나 민사조정에 비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화해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은 소장(訴狀)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장에는 우선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만약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公示)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원고가 되고 죄지은 사람이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도 민사소송과 다르다. 민사소송에서 원·피고는 개인이나 회사 등 법인(法人)뿐만 아니라 종중(宗中) 학교육성회·사교단체 등 사실상의 단체들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같은 무능력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바로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얼마짜리 소송이냐에 따라 합의부에서 다룰 것이냐 단독판사가 다룰 것이냐가 결정되게 된다(1,000만원 이상은 합의부).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訴狀)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장에는 우선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만약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公示)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돈 천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는 식으로 소송청구 원인이 무엇인지를 날짜, 장소를 구체적으로 써서 기재하고, "피고는 원고에서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소송청구취지를 쓰면 된다. 그리고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수입인지 액수는 "소송액$\times\frac{5}{1,000}$+320원"이다. 수입인지를 붙여 피고 숫자만큼 소장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된다.

5. 민사소송의 진행

① 피고에게 알림 :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서 피고를 상대로 어떤 소송이 제거되었는지를 미리 알려준다.

② 변론기일 지정 및 소환 :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날짜를 정해서 원고와 피고를 소환한다. 법원마다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변론날짜가 지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③ 주장과 답변, 항변 : 변론기일에 법원에 나와 원고가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빌린사실이 있다(자백)"또는 "없다(부인)"는 식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침묵) 자백한 것으로 취급되고, "모르겠다"(不和)"고 하는 것은 부인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때 피고는 "돈빌린 사실은 있지만(자백) 그 뒤에 갚았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를 항변(抗辯)이라 하고 피고가 이렇게 항변하면 다시 원고가 이를 자백, 부인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된다. 이러한 주장, 답변은 원고·피고가 변론날짜에 나와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글로 써서 제출할 수도 있다.

④ 입증 :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누가 입증해야 하느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개개 사건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입증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문서증명, 증인심문, 검증, 감정, 당사자본인 심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⑤ 변론날짜에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아주 불리하다 :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다만 불출석이라 하더라도 글로 써낸 답변은 인정된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양쪽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해서 소송이 끝나게 된다.

6. 민사소송의 종료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리면 끝난다. 보통 마지막 심리가 있은 2주후에 판결을 한다. 이외에도 소송을 취소하면 바로 소송은 끝나게 되고, 서로 화해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송은 끝난다.

7. 상소(上訴)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소라 한다. 상소에는 항소(抗訴)와 상고(上告)가 있다. 항소는 1심법원(지방법원, 또는 단독판사)에서 2심법원(고등법원 또는 합의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항소를 하려는 사람은 판결이 송달(送達)된 날부터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할 수 있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상고 역시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고장을 써서 대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인지는 1심의 3배를 붙여야 한다.

8.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전이라도 가집행(假執行)선고가 있는 판결이면 당사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 확정증명, 판결정본, 송달증명 및 집행문을 받아 이것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9. 기 타

옛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모든 정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주변사람들의 인심도 잃게 되고 집안이 기우는 수가 많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을 해서 화해하거나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될 경우라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사건브로커 등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